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25 발의연월일: 2025. 3. 27.

발 의 자: 나경원·조배숙·서일준

김미애 · 김석기 · 송언석

김선교 • 최수진 • 박덕흠

서천호 · 박성훈 · 고동진

인요한 · 김종양 · 이종욱

박준태 • 이인선 • 김은혜

임종득 • 박수민 • 강선영

곽규택・김 건・김민전

박상웅 · 김장겸 · 배준영

최보유 · 이종배 의원

(29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전의 확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8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망·절취·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유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 2.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 3.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높 은 기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98條(間諜) ① 敵國을 爲하여 제98조(간첩) ① 외국 또는 외국 間諜하거나 敵國의 間諜을 幇 인의 단체를 위하여 간첩하거 助한 者는 死刑, 無期 또는 7年 나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의 以上의 懲役에 處한다.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② 軍事上의 機密을 敵國에 漏 泄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다. ② 군사상의 기밀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기망・ 절취 ·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 로 취득・유출하여 국가의 안 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 한 위협을 초래한 자는 7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1.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 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 2.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 3. 국가안보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보호의 필요 성이 높은 기술